



개 관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몽골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프로그램 보급 협력사업은 몽골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 측과 협력 하에 예정된 활동 계획(첨부자료 참고)에 따라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2003 년에 채택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의 시행 범위 안에서, 몽골지역에 유네스코 인간문화재제도를 소개하고 시행하여 무형유산 및 보유자를 보호·유지·홍보하는데 있다.

사업 시행을 위하여 아래의 활동들이 정의·계획되었다.

1. 몽골 무형유산과 보유자에 대한 과거의 연구조사 자료와 데이터 정보, 현지조사 발견물 검토 및 분석, 몽골 무형유산의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2. 몽골 유네스코 인간문화재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체계 수립에 대한 권고안 개발 및 법률의 승인과 시행을 위해 책임 정부기관에 권고안 제출. 특히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조치 채택
 - a. 유네스코 인간문화재제도 수립을 주도하고 성공적으로 시행한 국가인 한국의 관련 법률 번역. 참고자료로써 몽골 전문가와 연구자에게 번역물 제공
 - b. 무형유산 보호 및 유지와 관련된 유네스코 출판 지침서와 인간문화재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의 관련 법률 중 몽골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규정, 무형유산과 보유자 홍보 지침서의 번역과 비교 평가 및 분석 시행
 - c. 인간문화재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된 연구 자료 및 문서로부터 도출된 연구 결과물 및 검토에 기초하여 ‘무형유산의 국가적 지원에 대한 결정, 등록, 보호, 전승, 발전 및 홍보에 관한 규제’와 ‘무형유산과 보유자 인정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규칙’의 초안 개발,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에 제출

3. 한-몽골 협력 사업 시행 시찰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무형유산 보호 및 유지와 관련된 실질적인 견해와 경험 공유
4. 무형유산 보유자 위치와 분포를 확인·조사·결정·기록하기 위하여 몽골 지역, 주로 서부 지역과 아이막(행정단위)에 현지 조사팀 파견
5. ‘몽골 무형유산 유형과 형태 목록’,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목록’, ‘몽골 무형유산 대표목록’ 초안을 개발하고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에 제출
6. 상기의 모든 검토 및 연구 분석 결과와 성과물에 기초한 몽골 무형유산 참고 설명서 초안 계획 수립. 2008년 12월 12일부터 13일에 개최된 공동 세미나 기간 동안 몽골과 한국 전문가 팀은 사업 시행에 관한 피드백을 제출했고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평가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더욱 깊이 있는 활동을 위하여 지역을 선정함. 이 활동들은 몽골에 인간문화재제도 소개와 관련하여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향후 몽골의 무형유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